

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10월 5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0월 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· 제11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(2004년 10월 20일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청소사업소장 문병섭)

□ 제안이유

- 폐기물처리시설(대장동 소각장)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(2004. 10. 23)가 만료됨에 따라,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 협의체의 위원 선정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동의요구내용

-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

구 분	성 명	성별	생년월일	주소 또는 소속	비고(임기)
계	7명				
위원(주민대표)	한정순	여	53. 3. 21	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71-3	2006.10.23
위원(주민대표)	박수재	여	58. 12. 7	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76-15	“
위원(시의원)	정윤중	남	55. 9. 29	부천시의회의원	“
위원(시의원)	김상택	남	59. 2. 17	부천시의회의원	“
위원(시의원)	서영석	남	64. 9. 16	부천시의회의원	“
위원(전문가)	여운호	남	55. 8. 1	인천전문대학 교수	“
위원(전문가)	김미경	여	62. 7. 30	경인여자대학 부교수	“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원 중에 주민대표 2명이 있는데 소각장 인근에 사시는 분입니까? ○ 위원 중 시의원의 역할이 민원 발생시 중재 등 쉽지 않은 역할로서 해당지역의 시의원으로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? ○ 위원 중 전문가로 선정된 분들의 전공이 지원협의체의 역할과 부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? ○ 전문가들은 이번에 선정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 선정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네, 인근 300미터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. ○ 명문 규정상 특별히 어느 지역 시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하라는 내용은 없으며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. ○ 부천에는 관련분야 전공자가 없어 외부 인사를 위촉하였으며 화공, 환경분야를 전공하고 있어 관련 있다고 봅니다. ○ 다음 기회에 선정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동의

6. 소수의견 요지

-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은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한 시의원 3명, 주변 영향지역 주민대표 2명,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으로 총 7명으로 되어 있어 적정하지만 대장동 소각장은 오정동에 위치하고 있어 오정동 소속의원도 협의체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도 바람직 함.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

의안 번호	제305호
의결 년월일	2004. 10. 22 (제115회)

제출년월일 : 2004. 10. 5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사유

- 폐기물처리시설(대장동 소각장)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 (2004.10.23)가 만료됨에 따라,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을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선정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동의 요구내용

-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

구분	성명	성별	생년월일	주소 또는 소속	비고 (임기)
계	7명				
위원 (주민대표)	한정순	여	53. 3. 21	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71-3	2006.10.23
위원 (주민대표)	박수재	여	58. 12. 7	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76-15	“
위원 (시의원)	정윤종	남	55. 9. 29	부천시의회의원	“
위원 (시의원)	김상택	남	59. 2. 17	부천시의회의원	“
위원 (시의원)	서영석	남	64. 9. 16	부천시의회의원	“
위원 (전문가)	여운호	남	55. 8. 1	인천전문대학 교수	“
위원 (전문가)	김미경	여	62. 7. 30	경인여자대학 부교수	“

□ 참고사항(관계법규)

-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을 제17조의2
-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을 시행령 제18조

□ 관계법규 조문

法	施 法 行 令																
<p>第17條의2 【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구성기준 및 결격사유】</p> <p>①지원협의체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사군구의회 의원,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금지산자·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<p>②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18조 【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·운영 등】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“주민지원협의체”(이하 “지원협의체”라 한다)의 구성방법은 별표2와 같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0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. ④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0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⑤그 밖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⑥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,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 ⑦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실시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. ⑧제8조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<p>[별표 2]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 (제18조제1항관련)</p> <p>1. 지원협의체의 정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폐 기 물 매 립 시 설</th> <th colspan="2">폐 기 물 소 각 시 설</th> </tr> <tr> <th>조성면적</th> <th>정원</th> <th>처리규모</th> <th>정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00만제곱미터이상</td> <td>21인 이내</td> <td>1일처리능력 300톤이상</td> <td>15인 이내</td> </tr> <tr> <td>100만제곱미터미만</td> <td>15인 이내</td> <td>1일처리능력 300톤미만</td> <td>11인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2. 지원협의체의 위원</p> <p>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, 환경상 영향의 정도,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군구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. 다만, 정원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가.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사군구의회의원 나. 주변영향지역(주변영향지역이 결정·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)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사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</p> <p>다.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</p> <p>비 고 : 1.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지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한다. 2. 주변영향지역(주변영향지역이 결정·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)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, 주민대표 대신에 해당 사군구의회 의원 각 4인과 사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. 3. 전문가는 전문대학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이상, 국·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또는 환경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.</p>	폐 기 물 매 립 시 설		폐 기 물 소 각 시 설		조성면적	정원	처리규모	정원	100만제곱미터이상	21인 이내	1일처리능력 300톤이상	15인 이내	100만제곱미터미만	15인 이내	1일처리능력 300톤미만	11인 이내
폐 기 물 매 립 시 설		폐 기 물 소 각 시 설															
조성면적	정원	처리규모	정원														
100만제곱미터이상	21인 이내	1일처리능력 300톤이상	15인 이내														
100만제곱미터미만	15인 이내	1일처리능력 300톤미만	11인 이내														